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Ⅰ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①과목 또는 사항		코드	②기초잔액	당 기 중 증 감		⑤기 말 잔 액	비 고
				③감 소	④증 가		
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	1. 자 본 금	01					
	2. 자 본 잉 여 금	02					
	3. 자 본 조 정	15					
	4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18					
	5. 이 익 잉 여 금	14					
		17					
6. 계		20					
7.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(을)(병)계		21					
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	8. 법 인 세	22					
	9. 지 방 소 득 세	23					
	10. 계 (8+9)	30					
11. 차 가 감 계(6+7-10)		31					

Ⅱ. 이월결손금 계산서

1.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

⑥ 사업 연도	이월결손금			감 소 내 역						잔 액		
	발 생 액			⑩ 소급 공제	⑪ 차감계	⑫ 기공제액	⑬ 당기 공제액	⑭ 보전	⑮ 계	⑯ 기한 내	⑰ 기한 경과	⑱ 계
	⑦계	⑧일반 결손금	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(⑨=⑮)									
계												

2.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(배분한도 초과결손금)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

⑰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	⑱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	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	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	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				
				㉓ 합계 (㉓=㉕+㉖)	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		㉗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(㉘일반결손금으로 계상) (㉑≥㉒의 경우는 "0", ㉑<㉒의 경우는 ㉒-㉑)	
					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	㉕이월결손금 (㉕=㉑) ㉑과㉒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		

Ⅲ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

㉗과목 또는 사항	㉘ 코드	㉙전기말 잔액	기초잔액 수정		㉚수정후 기초잔액 (㉙+㉛-㉜)	㉛비 고
			㉛증가	㉜감소		

작성 방법

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- 가. ②기초잔액란: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손익누계액,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,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㉔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: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.
- 다. ⑤기말잔액란: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: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,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마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란: "별지 제50호서식(을)"의 합계액과 "별지 제50호서식(병)"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- 바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: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(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).
- 사. 차가감 계: 6.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의 합계에서 10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.

2. 이월결손금 계산서

- 가. ⑧일반 결손금란: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(동업자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)을 적습니다.
- 나.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중 ㉕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.
- 다. ⑩「법인세법」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.
- 라. 감소내역란의 ㉒기공제액란: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마. 감소내역란의 ㉓당기공제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,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㉑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바. ⑭보전란: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,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.
- 사. ⑮계란: 이월결손금 ⑪차감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 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아. ⑰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자. ⑳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- 차. ㉑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을 적습니다.
- 카. ㉒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: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[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] 의 ㉑란 음수(△)금액을 적습니다.
- 타. ㉓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파. ㉔이월결손금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㉒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하. ㉕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: ㉒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(㉒란에서 ㉑란을 뺀 금액)을 적습니다.

3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

- ㉗~㉙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. 작성방법은 "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" 내용과 같습니다.

사업연도	· · · · · ·	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	법인명		
※ 관리 번호 - 사업자등록번호 - -					
※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.					
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					
①과목 또는 사항	②기초잔액	당 기 중 증 감		⑤기말잔액 (익기초현재)	비 고
		③감 소	④증 가		
합 계					

작 성 요 령

1.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.
2.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.
3.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.
4.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(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)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△표시 기입합니다.
5.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.
6.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에 옮겨 적습니다.
7.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.

작성 방법

1. 본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.
2.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.
3.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.
4. ③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.
5.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 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.
6.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 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 증가분은 △표시 기입합니다.
7. ⑥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.
8.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. [ex. 이전소득금액 통지서(출자의 증가)를 수령하는 경우,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,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]
9.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(을)[별지 제50호서식(을)]의 합계란의 금액과 합산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의 “7.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(을)+(병) 계”에 적습니다.